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2023. 11.



여성가족부

법제처 심사 전

1. 개정이유

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「청소년복지지원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61호, 2023. 10. 24. 공포, 2024. 4. 25. 시행)됨에 따라,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는 조치 중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 중 추가 사항(안 제17조의3제1항)
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, 청소년복지시설(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)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을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조치로 추가함.

나.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(안 제17조의3제2항)
청소년쉼터에 보호 중인 사람,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 중인 사람,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(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조치는 제외) 및 위의 시설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사람을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로 정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장에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7조의3(자립지원)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2. 청소년복지시설(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)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

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
1. 청소년쉼터에서 보호 중인 사람
2.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 중인 사람
3.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(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조치는 제외한다)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종료된 사람

부 칙

이 영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7조의3(자립지원) ① 법 제32조의3제1항제5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</u> <u>1.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</u> <u>2. 청소년복지시설(법 제31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치료재활센터는 제외한다) 종사자에 대한 자립지원 관련 교육</u> <u>② 법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</u> <u>1. 청소년쉼터에서 보호 중인 사람</u> <u>2.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지원 중인 사람</u> <u>3. 청소년회복지원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(법 제3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자립정착금 및 자립</u>

수당 지급에 관한 조치는 제외
한다)

4.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한
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지원이 종
료된 사람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272